



##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aiwan to Finalize Transfer Pricing Rules After Consultation \(Bloomberg TP Report vol. 26, no.8 pg. 365\)](#)

대만 재무부는 OECD Action Plan 을 2017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기 위해 정책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신규 이전가격문서화 요건을 포함할 본 법안은 9 월 25 일까지 공청회를 통해 산학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 연말까지 최종 법규를 입안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될 것이라고 대만 과세당국은 밝혔습니다.

본 초안은 다국적 기업들이 이전가격보고서(Transfer Pricing Document)를 법인세 제출 시 구비해야 하는 기존의 법안과는 달리,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등 3 단계로 구분된 이전가격문서화를 도입하는 등 OECD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는 연결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을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 매출 기준은 현재까지 발표된 바가 없으며 올 연말 본 법규의 최종안이 입안될 때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합기업보고서는 조직도, 전반적인 영업활동, 무형자산, 특수관계기업 간 거래, 재무 및 세무 현황 등 다국적기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며, 일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Unilateral Advance Pricing Agreement, "일방 APA"), 수익창출 요소와 공급망에 대한 분석 등의 정보들도 포함합니다. 납세자는 법인세 납부 시 통합기업보고서를 구비해야 하며,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24 August 2017

#### KEY CONTACTS

#####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 개월 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본 초안에 따르면, 통합기업보고서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중문 번역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만 과세당국은 OECD Action 13 을 도입함에 따라 다국적기업 관련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한 투명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Why a Small Group of Big Companies Gives Ireland a Tax Headache? \(Bloomberg TP Report vol. 26, no.8 pg. 346\)](#)

“왜 아일랜드 정부는 대형 다국적회사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가?”

이는 아일랜드 재무부와 의회 위원회가 2018 년 예산안 발표를 3 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되짚어 보고 있는 질문입니다. 아일랜드 국세청의 2015 년 연간보고서는 법인세에 대한 관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2015 년도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49%가 증가한 76 억 유로(88 억 달러)였습니다. 한편, 과세당국은 2017 년 4 월 아일랜드 법인세 수입의 37%가 상위 10 개의 회사로부터 징수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12.5 %의 법인세율

유럽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 중 하나인 아일랜드의 법인세율(12.5%)은 외국회사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아일랜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 방편으로서, 아일랜드 내에서 수행된 연구개발로 발생하는 특정 수익에 대해서는 6.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지식개발상자(Knowledge Development Box) 정책을 작년에 소개하였습니다.

- OECD 세법 개정

OECD 의 글로벌 세법 정책 개정 작업과 같은 외부적 요소들은 외국회사들이 2003 년 아일랜드가 12.5% 법인세율을 도입한 이후 아일랜드에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더욱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일례로, 2015 년 OECD 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2 년 여에 걸쳐 완수한 프로젝트는 다국적기업들로 하여금 조세피난처를 멀리하고 아일랜드와 같은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 브렉시트(Brexit) 요인

OECD 의 BEPS 프로젝트와 더불어, 지난해 EU 를 탈퇴한다는 영국의 결정은 다국적기업들을 위한 투자처로서 아일랜드의 입지를 부각시켰습니다. 런던에 소재한 Barclays 는 브렉시트 이후 본사를

더블린에 둘 것이라고 1 월에 발표하였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롯에 소재한 Bank of America 도 이번 달 초 브렉시트를 대비하는 긴급대책을 마무리하면서 동일한 내용의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 13 조 유로

하지만 과도한 법인세 수입은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아일랜드 정부의 법인세 수입을 둘러싼 논의도 정부가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를 상대로 한창 소송을 진행 중일 때 이루어졌습니다. 유럽연합 집행부(EU's executive body)는 2016 년 8 월 30 일 성명서에서 애플社가 아일랜드에 13 조 유로의 세액을 체납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 금액은 아일랜드가 지난 해에 거두어들이는 법인세 수입의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아일랜드는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 국경세 조정

브렉시트가 아일랜드의 경기부양에 기여한 반면, 국경세를 강화하려는 공화당의 노력에 따른 미국의 세법개정은 향후 아일랜드로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세법 개정은 아일랜드가 외부 경제 요인들에 얼마나 민감한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으며, 아일랜드 재무건전성의 측면에서도 소수의 대형 다국적회사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India Adds Two APA Officials to Cover Application Load](#)

#### [\(Bloomberg TP Report vol. 26, no.8 pg. 368\)](#)

인도의 APA 프로그램은 2012 년 도입 후 2017 년 3 월까지 815 건의 합의 신청이 있었으며, 인도 과세당국이 뭄바이와 방갈로 지방에 2 명의 고위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담당국장을 추가로 임명함에 따라 7 월에만 9 건의 일방 APA 가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인도는 전 세계 이전가격 관련 소송의 70%를 차지하며, 이러한 인도 내 이전가격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APA 수요가 특히 많습니다. 인도 정부 또한 이러한 수요를 인지하고 이를 충족시키고자 관련 인력을 충원하였습니다.

현재, 일방 APA 의 타결까지 평균적으로 28.93 개월이 소요되며 체결된 일방 APA 대상의 70% 이상이 정보기술, 금융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으로 확인됩니다. 이전가격 관련 소송 중 일부는 최대 10 년까지도 소요되므로 다국적 기업은 일방 APA 를 신청함으로써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이전가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인도 과세당국

또한 이번에 확충된 인력을 통해 더 많은 APA 신청 건을 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aton Bests IRS on Cancellation of Advance Pricing Deal / Eaton Opinion Sets No New Precedent for IRS: Practitioners**  
**(Bloomberg TP Report vol. 26, no.8 pg. 347)**

미국 조세법원의 Kathleen Kerrigan 판사는 미국 국세청(IRS)이 Eaton Corp 와 맺은 두 건의 APA 를 일방적으로 소급 취소하여 Eaton Corp 에게 1 억 2600 만 달러의 미납세금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판결하였으며 또한, Eaton 은 무형자산을 해외자회사로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 부과(Section 367(d))는 부당하고 임직원에게 제공한 보너스도 소득공제 항목(Section 162(a))에 속하므로 Eaton 의 소득공제는 적절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aton 은 산업 및 항공기 제조회사로 푸에르토리코 및 도미니카 공화국에 소재한 해외 자회사로부터 부품을 수입하는 거래에 대해 IRS 와 일방 APA 를 두 차례 체결하였으나 IRS 는 2011 년, Eaton 이 APA 의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연간보고서 제출 의무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존에 체결된 APA 를 모두 소급하여 취소하였습니다. Eaton 은 IRS 의 요구와 APA 조건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IRS 에 제공한 모든 중요 자료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잘못 기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Kerrigan 판사는 IRS 가 Eaton 과 협의한 두 건의 APA 를 체결하지 않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으며, 내부적으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TPM)을 적용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IRS 가 APA 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Kerrigan 판사는 IRS 가 Eaton 의 자료제출 불성실에 대해 우려했다면 애초에 두 번째 APA 를 체결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하였고, APA 는 구속력이 있는 계약인 바, 관련 법 규정(Revenue Procedure)에 의해서만 해지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IRS 는 90 일 내로 항소할 수 있으나 판결이 명백하게 잘못 났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판결을 뒤집기엔 무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판결로 인해 한번 체결된 APA 에 대해서는 IRS 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APA 체결에 있어 명백한 사실관계가 중요한 것을 다시 일깨워주는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APA 프로그램 및 과세당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orea: proposed changes in the Law for the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LCITA)**

기획재정부는 2017년 8월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세법개정안은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전가격 실효성 제고 (국조법 §5, §6①)**

현행	개정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독립기업원칙 규정 ○ 독립기업간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조건을 반영 * 가격 외에 다른 거래조건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기능, 계약 조건, 경제환경, 사업전략 등
<input type="checkbox"/>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기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	<input type="checkbox"/> 사전승인 신청기한 변경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일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범위 확대(국조법 §13④)**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이전가격세제 적용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사유	<input type="checkbox"/>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
<추 가>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한 경우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사전조정제도 개선(국조법§6 의 3, 국조령§14 의 7, 관세법§37 의 2, 관세령§31 의 4)**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국세 정상가격-관세 과세가격간 사전 조정제도	

<p>○ 신청대상 :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로 한정</p> <p>* (국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p> <p>** (관세) 동종·동질 수입물품 거래가격법, 유사수입물품 거래가격법, 국내판매가격 역산방법, 산정가격방법</p> <p>&lt;신 설&gt;</p>	<p>○ 산출방법이 다른 경우도 신청 허용</p> <p>□ 실무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p> <p>○ 사전조정을 위한 국세청-관세청간 실무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p> <p>○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규정</p> <p>* 10명 이내의 국세청 및 관세청 실무자로 구성</p>
---	--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사후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기한 확대 (국조법 §10 의 2, 관세법 §38 의 4)**

현행	개정안
<p>□ 국세 정상가격-관세 과세가격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기한</p> <p>○ 결정·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음을 안 날(처분 또는 사전승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p>	<p>□ 경정청구 기한 확대</p> <p>○ 2개월 → 3개월</p>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혼성불일치 해소규정 신설(국조법 §16 의 4 신설)**

현행	개정안
<p>&lt;신 설&gt;</p>	<p>□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비용공제 제한</p>

① 적용 대상

㉠ (대상 거래)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을 이용한 국제거래

㉡ (혼성금융상품) 부채·자본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금융상품(예: 이익참가부 사채)으로 한 나라에서는 부채로 보나 상대국에서는 자본으로 취급

\* 다만, 금융기관이 자본확충 목적으로 발행한 경우는 제외

㉢ (적용 요건) 비용 공제된 지급금액의 전부·일부가 상대국에서 일정기간\* 내에 과세되지 않은 경우

\* 지급자의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수취자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② (비용공제 제한) 상대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비용공제 불인정

③ 신고 절차

i)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서 제외하고 법인세를 신고

- 다만, 손금 제외된 지급비용이 일정기간 내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시\* 그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손금 산입 허용

\* 납세자가 입증자료 제출

ii)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일정기간 내 수취인 거주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 일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이자상당 가산액 포함)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다국적기업 이자비용 손비인정 제한 제도 도입(국조법 §16 의 2, §16 의 3 신설)**

현행	개정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 대상)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 및 보험업은 제외</li> </ul> </li> <li>○ (공제 제한) 세무상 조정소득금액 대비 순이자비용이 일정비율(3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이자비용 손금 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가산</li> <li>- (적용 이자비용)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순이자비용(이자지급액-이자수취액)</li> </ul> </li> <li>○ 현행 과소자본세제와 이자비용공제 제한제도 중 부인되는 금액이 큰 규정 적용</li> </ul>

**역외세원 관리 강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 인하(국조령 §49)**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다음의 해외금융계좌는 세무관서에 신고 의무</li> </ul>	<input type="checkbox"/> 신고기준금액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억원 초과</li> </ul>



- 연중 매월 말일 기준  
최고잔액이 10억원 초과

**역외세원 관리 강화: 간접투자기구 외국납부세액 환급 범위 축소(법인법 §57 의 2)**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간접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해외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 이중과세 조정 방법  ① 펀드가 국외원천소득(배당, 이자 등)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관할 세무서장이 펀드에 환급  - 한도 : 국외원천소득의 14%	<input type="checkbox"/> 환급한도 인하          - 10%로 인하

**역외세원 관리 강화: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과태료 인상(국조령 §51①)**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한 경우 1억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 거짓제출시 : 보고서별 1천만원 - 개별기업보고서 - 통합기업보고서 - 국가별보고서	<input type="checkbox"/> 과태료 인상     ○ 1천만원 → 3천만원

[Back to t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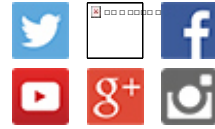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7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https://kpmg.com/socialmedia)



[kpmg.com/app](https://kpmg.com/app)

